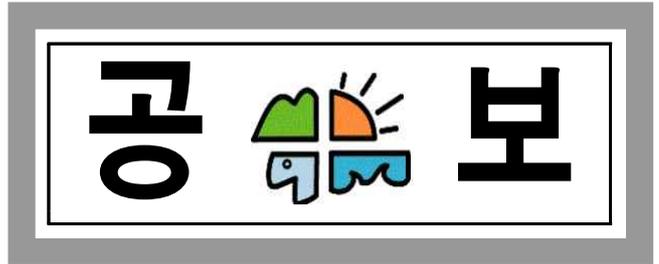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06호 2023년 12월 08일(금)

조 례

-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3
-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8
-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규 칙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3
-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5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31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6
- 속초 도시관리계획(청호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8

공 고

- 소하천(하도문천) 정비사업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공람·공고 … 42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43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60호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예방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1호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2호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속초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속초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검토

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이행점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공무원

다.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별로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63호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속초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속초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3명 이내
2. 외부 전문가 등: 4명 이내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와 관련된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한다.

② 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 지원경비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10조의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시 연구활동비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액은 기준금액(편성된 예산 총액을 의원 정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 의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2개의 연구단체에 중복으로 소속된 의원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각 연구단체에 지원한다.

③ 정책개발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기간 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취소 전 정당하게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경과보고서의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신청서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을 신청합니다.

연구 단체 명		
의 원 명	당 초	의원 (서명, 인)
	변 경	의원 (서명, 인)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의원 : (서명, 인)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1555호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별의 총 및 동명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248	1,218	
동명동	18	85	

별표 중 동명동의 제2통 제5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동	제 2 통	제 5 반	동명동	99-2	일원	
동명동	제 3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1동 아파트내 상가
		제 2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2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3동

별표 중 동명동의 제5통 제5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동	제 5 통	제 5 반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	-------	-------	-----	--	-------------	--

별표 중 동명동의 제10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통 제6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통란을 삭제한다.

동명동	제 10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5동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6동 아파트내 상가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7동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8동
동명동	제 11 통	제 6 반	동명동	450-217	일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56호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5조, 제16조,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단원은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단원 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단원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
2.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제3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수 등급별 획정호봉 및 점수 기준(제10조 관련)

1. 등급별 획정호봉

- 임명일을 기준으로 임명 전 1년 동안의 각종 대회 입상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조정

- (1) A 등급 : 7급 8호봉
- (2) B 등급 : 7급 5호봉
- (3) C 등급 : 7급 3호봉

2. 등급별 점수

- (1) A 등급 : 15점 이상
- (2) B 등급 : 7점 이상 ~ 15점 미만
- (3) C 등급 : 7점 미만

3. 입상실적별 점수 기준

구 분	1등	2등	3등	비 고
국제 대회	30	20	15	
전국 체전	10	7	5	
전국 대회	7	5	3	

[별표 2]

특별승급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해 당 성 적	비 고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경기대회 1위 입상 	5호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 · 아시안게임 1위 입상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3호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 ·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국제대회(오픈대회) 1위 입상 	2호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 · 국제대회(오픈대회) 3위 이내 입상 	1호봉

[별표 3]

우수선수 유치비(제14조제1항 관련)

급 수	유 치 비 기 준	지 급 액 (연간)	비고
A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2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3회 이상 입상 경력자 · 전국 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의 한국 신기록 수립자 	30,000,000원 이내	
B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 경력자 · 지난 1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자 	10,000,000원 이내	
C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5,000,000원 이내	

[별표 4]

국내·외 입상단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등	2등	3등
올림픽경기대회	개인	10,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단체	10,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아시안게임	개인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단체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5,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단체	5,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국제대회 (아시아대회 포함)	개인	2,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단체	4,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전국체전	개인	1,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단체	3,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전국규모대회	개인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단체	2,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비 고]

- ① 개인전에서 입상한 경우,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안게임 또는 세계선수권대회는 해당 선수에게 100퍼센트 지급, 감독 및 코치에게는 각각 50퍼센트 지급하며, 국제대회 (아시아대회 포함)·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대회는 해당 선수와 감독 및 코치에게 각각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② 단체전에서 입상한 경우,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안게임 또는 세계선수권대회는 해당 선수단에게 100퍼센트 지급, 감독 및 코치에게는 각각 50퍼센트 지급하며, 국제대회 (아시아대회 포함)·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대회는 해당 선수단과 감독 및 코치에게 각각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③ 단, 전국의 5개 팀 이하가 출전한 전국 대회와 시범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속초시 고시 제2023-1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종근이 시행하는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속초시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사업주체 및 대표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종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성빌딩 1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위치: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8 외 30필지
 - 면적: 7,373m²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3,540.3299m²
 - 연면적 : 69,220.7893m²
 - 주건축물수 : 3동
 - 지하층수/지상층수 : 지하 4층/지상 40~43층
 - 총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313세대
 - 사업비 : 217,447,999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4. 6. 1. ~ 2026. 12. 1.(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제협의조서(붙임)

붙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제협의조서 1부.

< 붙임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1	청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	증) 7,613	7,613	-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51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7,613	◦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구역내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613	-	7,613	10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9	-	1,559	20.50	-
일반상업지역	6,054	-	6,054	79.50	-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

3.2.1. 도로총괄표

■ 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2	552	5,068	1	307	3,149	1	245	1,919	-	-	-
소로	2	552	5,068	1	307	3,149	1	245	1,919	-	-	-

■ 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2	552 (233)	5,530 (462)	1	307 (85)	3,266 (117)	1	245 (148)	2,264 (345)	-	-	-
소로	2	552 (233)	5,530 (462)	1	307 (85)	3,266 (117)	1	245 (148)	2,264 (345)	-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2.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6	10 ~ 12	국지 도로	307	청호동 444-22 (소로1-14)	청호동 444-28 (소로3-140)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 호)	
변경	소로	1	16	10 ~ 12	국지 도로	307 (85)	청호동 444-22 (소로1-14)	청호동 444-28 (소로3-140)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 호)	()는 구역 내
기정	소로	2	97	8 ~ 10	국지 도로	245	청호동 444-141 (중3-12)	청호동 459-160 (중3-18)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 호)	
변경	소로	2	97	8 ~ 10	국지 도로	245 (148)	청호동 444-141 (중3-12)	청호동 459-160 (중3-18)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 호)	()는 구역 내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2.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6	소로 1-16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3,149㎡ → 3,266㎡
소로 2-97	소로 2-97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1,919㎡ → 2,264㎡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신설	BL1	A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444-18번지 일원	7,373	주상복합
		B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55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68번지 일원	240	공공시설
합 계				7,613	

※ A획지 내 일반상업지역에서만 주상복합시설 허용.

※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	청호동 444-18 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제1종일반주거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높이	◦43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도면참조	
		색채	◦도면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청호동 444-18 번지 일원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속초시 고시 제2023-15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아래 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188	중앙503-116대 중로2-1	중앙532-2대 소로3-39	일반도로	속고제2017-62호 (2017.8.7.)	
폐지	소로	3	41	6	-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 3-41	-	◦ 폐지	◦ 새뜰마을사업 종료, 지형여건 불리, 사업비 과다, 주민 요청 등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하여 장 기미집행 시설로 준치 우려가 있어 도로를 폐지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	주차장	설악동 309잡 일원	40,414	감)6,147	34,267	속고 제2013-16호 (2013.5.6.)	자연녹지지역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27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면적 변경 - 기 정 : 40,414m² - 변 경 : 34,26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산로, 청봉로와 인접한 노외주차장 부지내 도시재생사업 및 소방청사를 신축하고자 주차장 시설을 부분 해제하여 결정(변경)

속초 도시관리계획(청호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23-156(2023. 12. 6.)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청호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1	청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	증) 7,613	7,61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5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7,613	□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7,613	-	7,613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9	-	1,559	20.5	
일반상업지역	6,054	-	6,054	79.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교통시설(도로) 총괄표

- 기정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2	552	5,068	1	307	3,149	1	245	1,919	-	-	-
소로	2	552	5,068	1	307	3,149	1	245	1,919	-	-	-

- 변경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2	552 (233)	5,530 (462)	1	307 (85)	3,266 (117)	1	245 (148)	2,264 (345)	-	-	-
소로	2	552 (233)	5,530 (462)	1	307 (85)	3,266 (117)	1	245 (148)	2,264 (345)	-	-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1	16	10 ~ 12	국지 도로	307	청호동 444-22 (소로1-14)	청호동 444-28 (소로3-140)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1	16	10 ~ 12	국지 도로	307 (85)	청호동 444-22 (소로1-14)	청호동 444-28 (소로3-140)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는 구역내
기정	소로	2	97	8 ~ 10	국지 도로	245	청호동 444-141 (중3-12)	청호동 459-160 (중3-18)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2	97	8 ~ 10	국지 도로	245 (148)	청호동 444-141 (중3-12)	청호동 459-160 (중3-18)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는 구역내

▣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6	소로 1-16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149㎡ → 3,266㎡
소로 2-97	소로 2-97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1,919㎡ → 2,264㎡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51	BL1	A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7,373	주상복합
			B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55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68번지 일원	240	공공시설
합 계					7,613	

※ A획지 내 일반상업지역에서만 주상복합시설 허용.

※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A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용 적 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높 이	◦ 43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도면참조	
		색 채	◦ 도면참조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청호동 444-1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소하천(하도문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공람·공고

소하천(하도문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6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소하천(하도문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2169일원

다. 사업규모: 소하천 정비(L=0.75km)

2.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가. 공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 12. 6.~2023. 12. 20.(14일간)

나. 공람 및 이의신청 장소: 속초시청 건설과 균형발전팀, 대포동주민센터

다. 열람내용: 정비사업 실시설계(안) 및 사업관련 서류 등

라. 이의신청 방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마.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장소: 2023. 12. 12.(화) 14:00 하도문 경로당(2층)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균형발전팀(033-639-2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속 초 시 장

가. 공 고 명: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속초시 금호동 512-73번지

다. 공고방법: 속초시공보,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3. 12. 8. ~ 2023. 12. 22. (14일간)

마. 도로 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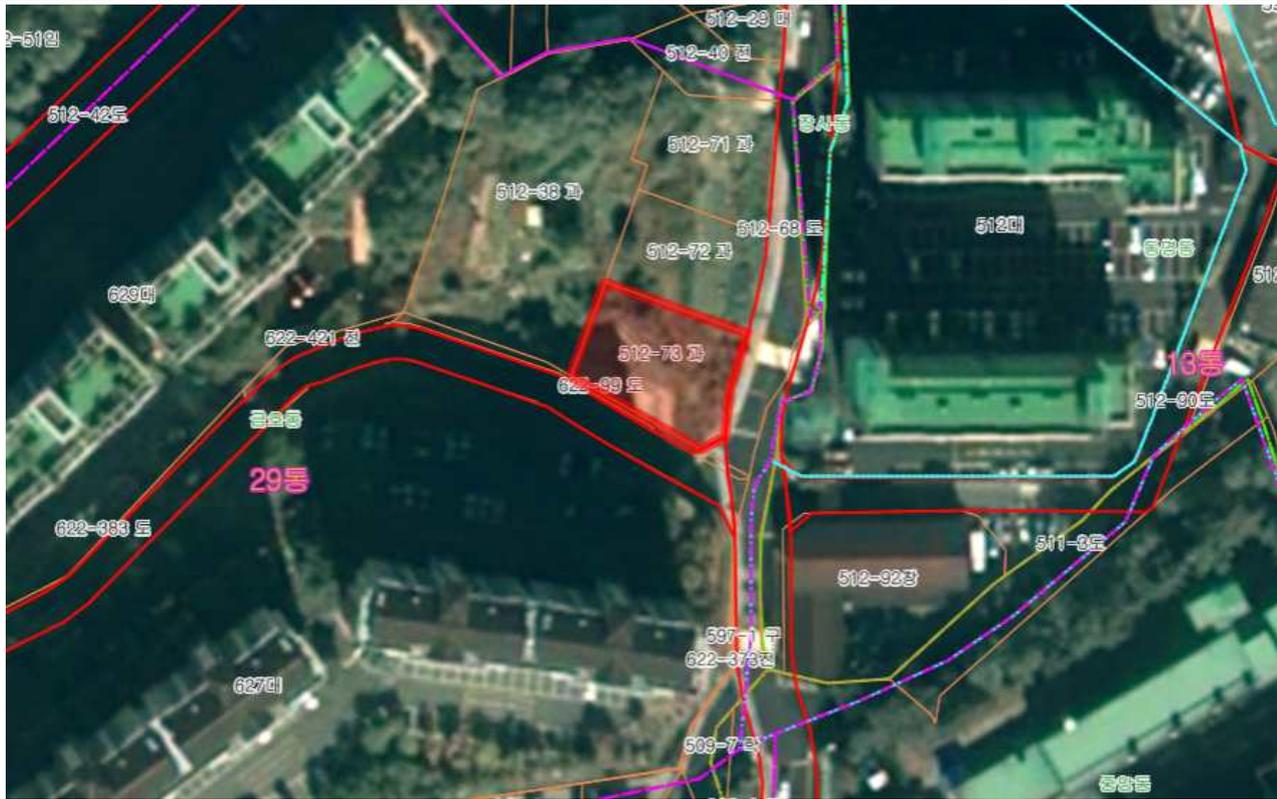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허가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512-73	과	584	21	○○○○ 공동체	금호동 512-73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3-건축과-신축허가-1 (2021. 7. 29.)	건축주: ○○○○ 공동체

바. 관계도서: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사.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685)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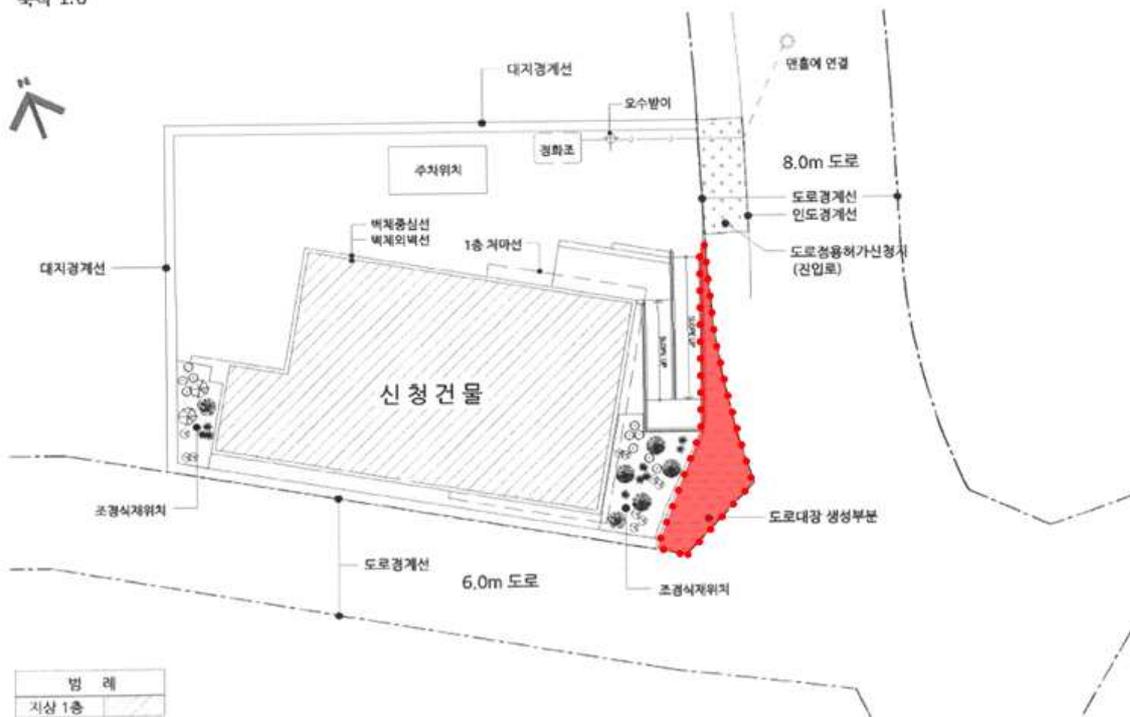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축척 1:0



현황도

축척 NONE